
AI 발생우려 대상 관리강화 방안

- 역학관련 농가 예찰 및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검사 집중 -

2015. 12.



농림축산식품부
Ministry of Agriculture, Food and Rural Affairs

☐ ☐ 목 차 ☐ ☐

- I. 추진배경 1
- II. 조치사항 및 문제점 2
- III. 추진목표 및 전략 3
- IV. 주요 관리강화 방안 4
- V. 향후 추진계획 10

< 참고자료 >

- 1. 역학관련 농장 및 시설현황 11
- 2. 가축거래상인 등록 관련 규정(축산법) 12
- 3. 자가소비 및 자가조리 판매를 위한 도축 가능지역 · 14

I. 추진배경

- 9.14일 전남 나주·강진 2개 오리농장 내 의심축 확인, 9.18일 고병원성 AI 확진 후, 현재까지 6개 시·군, 총 17건 발생*
 - * 9월 7건(나주 1, 강진 2, 담양 2, 광산 1, 북구 1), 10월 7건(영암 6, 나주 1), 11월 3건(영암 3)
- 육용오리 농장에서 최초 발생 이후, 전통시장, 가든형 식당 및 계류장 등 방역 취약지역 중심으로 총 7건* 발생(9.14~9.22)
 - * (9.14) 농장 2건 (9.16) 전통시장 2건 (9.20) 가든형 식당 1건 (9.21) 계류장 1건 (9.22) 농장 1건
- 10월18일, 영암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 발생한 이후, 동 농가 보호지역(3km 이내) 내 예찰과정에서, 총 10건* 발생(10.18~11.15)
 - * (10.18, 10.23, 10.26, 11.13) 출하전 5건, (10.27) 일제검사 3건, (11.14, 11.15) 예살 2건
- 11.15일 이후, 추가 발생은 없으며, 예찰지역(10km) 내 육용오리 도축장 출하(46호, 845천수) 완료, 현재 종오리 5농가 사육 중
- ※ **금번 발생은 AI 방역체계 개선에 따라 농가 신고가 아닌 예찰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확인, 사전 예방적인 질병대응 가동 판단**
- 전남 영암 방역대 내 발생요인은 감소하였으나, AI 추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생우려 대상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
 - AI 발생농가 출입 등으로 인해 역학관련 대상으로 분류되어 기 방역조치 하였으나, 동 대상을 통한 재발 우려 가능성 상존
 - * 발생농가에서 AI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잠복될 가능성은 낮으나, 지속적인 관리 필요
 - 최초 발생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전통시장, 계류장 및 가든형 식당 등 취약지역의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한 관리 강화 요구
 - * 최근 광주시 소재 계류장 H5 항체 검출과 같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계류장 등을 통한 추가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

II. 조치사항 및 문제점

- (조치사항) 역학관련 시설·차량, 전통시장, 계류장 및 가든형 식당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을 통해 전파 차단
 - 발생농장과 역학관련 대상은 7~14일간 이동제한 및 소독 등 조치한 후, 정밀검사 등을 통해 음성일 경우 이동제한 해제
 - 고병원성 AI 발생시 전국적인 생오리 판매 금지, 일제 소독 및 검사* 등 취약지역을 통한 전파 및 잠복 차단에 총력 집중
 - * 판매금지 : '15.9.15~21, 11.11~(광주 전남), 일제소독 : 9.17~21(매주), 일제검사 : 분기별 1회
- ※ 역학대상 및 취약지역 등을 신속히 파악 후, 강력한 초동대응을 통해 타 지역 등으로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·운영
- (문제점) 일반 농장 등에 비해 역학관련 시설 및 취약지역을 통한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 필요
 - 역학관련 대상 중 사람과 차량을 제외한 농장, 부화장, 사료 관련시설, 왕겨관련 업체* 등을 통한 발생 및 전파 가능
 - * 전체 역학관련 대상 791개소 중 사람·차량 등 297개소를 제외한 494개소
 - 전통시장 및 계류장은 여러 농장에서 반입된 후, 불법으로 도축하여 판매되고 있어 방역 및 위생관리에 한계 발생
 - * 전통시장 299개소, 가금판매소 369개소, 가금중개상인 196명(계류장 등 146개소)
 - 가든형 식당은 업소 수가 많으며, 가금을 일시 사육 후, 자가 조리용으로 도축하고 있어 방역 및 위생관리 미흡
 - * 가든형 식당 현황 : 925개소(미사육 100, 1~50수 557, 51~100 125, 101~1000 134, 1,000초과 9)
- ※ 지속적인 예찰 및 점검을 통해 취약대상에 의한 AI 발생 차단 필요

III. 추진목표 및 전략

목표

고병원성 AI 재발 방지 및 안정화 유지

< 기 발생한 전남지역으로부터의 전파 차단, 과학적 위험관리 및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비 발생 지역의 추가발생 방지 >

추진 전략

역학관련 농장 등 관리강화

- ① 역학관련 대상 예찰 및 검사 등 지속
 - 발생농장 역학관련 농장, 계류장, 전통시장 등

전통시장 및 계류장 관리강화

- ② 가금판매업소 거래상인 등록 및 관리 강화
 - 축산법에 따라 등록 및 D/B 구축·관리
- ③ 유통 가금류에 대한 예찰검사 등 확대
 - 상시예찰 검사물량 확대 등 모니터링 강화

가든형 식당 관리강화

- ④ 가든형 식당 사육시설 등록 및 점검강화
 - 사육시설 방역기준 마련 등 관리체계 구축
- ⑤ 가금 공급농가에 대한 출하관리 강화
 - 출하전 검사, 자가조리 판매허용 제한

제도기반 구축 및 유통체계 개선

- ⑥ 종오리장·부화장 방역관리요령 마련
 - 주기적 검사 및 이동상황 관리체계 구축
- ⑦ 가금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
 - 소규모 도축장 시설 설치 등 공급체계 구축

IV. 주요 관리방안

< 기본방향 >

- ◆ AI 발생 우려 대상의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발생 가능성 최소화
 - 발생농가 관련 역학농장 등에 대한 예찰 및 정밀검사 등 지속
 - 전통시장, 계류장 및 가든형식당 등 취약지역 관리시스템 구축

1 역학관련 농장 및 시설 관리강화

- 지난 9.14일 이후 발생농가 역학관련 대상 중 사람 및 차량을 제외한 농장, 계류장 등에 대한 예찰 및 정밀검사(12.22~)
 - 전체 791개소*(12.20일 기준) 중 사람 및 차량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, 농장 및 계류장 등 494개소에 대해 관리 지속
 - * 농장 359개소, 계류장 10개소, 부화장 10개소, 사료 18개소, 전통시장 74개소, 왕겨업체 10개소, 기타 13개소 / 사람 150명, 차량 124대, 기타 23개소
 - 농장은 1차 방역본부 전화예찰을 통해 이상 유무 확인 후, 2차로 전 농장(빈축사 포함) 정밀검사 추진(출하전 검사 활용)
 - 그 외 계류장, 부화장,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시료채취 및 정밀검사 등 상시예찰* 따라 추가 검사 추진('16.1월까지)
 - * '16년 AI 상시 예찰검사 추진계획에 따라 1/4분기 검사물량을 조기에 시행
- 검사기관(검역본부, 시·도 방역기관)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(KAHIS)에 검사실적 즉시 입력, 검사결과 확정 및 변경
 - 정밀검사 의심축 발생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(SOP)에 따라 확인검사 의뢰,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등 조치
 - * 전통시장 및 추적 검사결과 저병원성 양병검출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, 1개월간 재검사

2 가금판매업소 가금 거래상인 등록 및 관리 강화

□ 전통시장 가금 판매업소, 가축거래상인 등록 확대('16.1월~)

- 일부 지자체(시군)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 적용(의무교육 6시간 이수 후 관할 시군에 등록)
- 전통시장내 가금판매업자의 경우 대부분 생닭 및 생오리를 구매 후,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축산법* 적용 대상

* 축산법 제2조제9호 및 제34조의2 : 닭·오리를 구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도록 규정

□ 전통시장 가금 판매업소의 가축거래상인 점검 등 관리강화

- 축산법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교육실시, 가축 거래 시 구입 및 판매 기록관리 등 준수사항 점검, 미이행 시 벌칙 부과* 등

* 축산법 제54조 및 제56조 : 가축거래상인 미등록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, 가축거래상인 준수사항 위반 시 500만원이하 과태료

- 가금 판매업소 및 거래상인 등 통합관리를 위해 국가동물방역 통합시스템(KAHIS) 내 DB 구축 등 관리체계 전산화

3 유통 가금류에 대한 예찰검사 등 확대

□ 전통시장에 가금류 공급 가금거래상인*의 차량 및 계류장에 대해 분기별 검사 및 판매소 항원 양성시 추적검사 의무화

* 검사대상 : 「전통시장 가금인증제」 참여하는 토종닭 유통 상인 36명

- 『'16년도 AI 상시예찰 검사 계획』에 '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가금류 공급 가금거래상인의 차량 및 계류장 검사' 항목 추가

< 전통시장 가금인증제 개요 >

- ◆ **목적** : 「가금공급농가-가금중개상-판매소」 간 거래를 가금중개상 중심으로 신고하여 거래처가 단순하고 고정적이 되도록 유도
- ◆ **자격요건** : ① 가금중개상 정보* KAHIS 입력 ② 생산자단체 가입 ③ 협회주관 교육이수 ④ 차량 및 계류장의 AI 환경검사·소독 의무
- ◆ **권한 및 책임** : (권한) 축종별 「협회 인증」 및 해당 판매소 배타적 영업권 부여, (책임) AI 항원검사(H5, H9) 추적조사시 오염원인 확인
- ◆ **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** : 각 협회에서 축종별 「판매소-중개상-공급농가」 거래체계 확보, 인증제 관련 운영사항은 각 협회에서 농식품부·검역본부 보고, 명예감시원 활용하여 인증업체 점검 및 미흡시 인증 회수

□ 국내에서 사육하는 AI 불현성 감염이 특징인 특수 가금류*에 대한 조기 색출을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마련

* 전통시장 및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대만오리(Moscovy Duck) 등 상시예찰에 제외되어 있는 검사대상을 '16년 상시예찰에 포함 등 추진

□ 검역본부 및 지자체가 전통시장 방역실태 점검시 활용할 수 있는 AI 현장진단 키트 보급 및 활용방안 마련(검역본부, '16년~)

* 분기별 예찰은 간극 발생으로 신속·정확한 AI 검출이 가능한 키트 개발 필요

□ 지자체에서는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을 위촉*하고 감시원 운영을 통해 가금판매소 자율적인 방역 조치사항 준수토록 지속 지도

* '16년도 전국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위촉인원 총 100명 계획('15.12월 현재 30명)

○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을 통해 판매소가 판매시설 및 운반차량 등을 매일 세척 및 소독,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및 보관 지도

□ 공동방제단이 “전국 일제 소독의 날” 소규모농가 외에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소독하고 가금판매소는 반드시 **All-out** 실시

○ '16년 “전국 일제 소독의 날” 운영 지원사업 계획에 반영, 추진

4 가든형 식당 사육시설 등록 및 점검강화

- 가든형 식당 중 사육시설이 10m² 이상은 축산법상 등록, 10m² 미만은 KAHIS 시스템 등록을 통한 방역 관리체계 구축
- 사육시설 등록대상을 조사하여 10m² 이상인 경우 축산법상 등록, 시설기준 및 방역기준 준수사항 등 점검 및 관리
 - * 가든형 식당에 대한 사육시설 조사를 통해 축산법상 등록조치('16.4.12까지)
- 미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시설은 KAHIS내 등록, 소독실시 여부 등 차단방역실태 점검 및 관리
 - * 주 1회 이상 소독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비치 여부 등 방역준수사항

5 가금 공급농가에 대한 출하관리 강화

- 가금 농장에서 가든형 식당으로 생축 공급 시 출하전 신고의무 부여 및 상시예찰 검사대상에 추가('16년부터)
- 가든형 식당 출하 생축에 대해 출하전 검사 신고 및 주기적 출하전 검사* 실시, 가든형 식당은 분기별 검사 추진
 - * 예) 출하 전 신고 5회 시마다 출하전 검사 실시(평시)
- “자가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도살·처리 미 허용지역”에 있는 가든형 식당에 가금류 공급 제한(도계육 공급) 조치('16.1월~)
- 농가에서 출하전 신고 시 “자가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도살·처리 미허용지역”의 가든형 식당에 대해 출하 제한 조치
 - * 전국 “자가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도축처리 미허용지역(읍면동)”에 대해 지자체, 가금농가, 가축중개상인 및 전통시장 판매업소 등에 사전 홍보

6 종오리장·부화장 방역관리요령 마련

- 분양 오리농가로의 질병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종오리장(101호)·부화장(52호)의 종합적인 방역관리 방안 마련
 - * 종돈장과 종계장·부화장은 각각 ‘방역관리요령(고시)’을 통해 해당 축종에서 문제가 되는 질병에 대한 검사 및 방역 관리 실태 분기별 점검 실시
 - (관리 질병) 고병원성 AI, 바이러스성간염, 바이러스성장염
 - * 가축전염병 : (1종) 고병원성 AI, (2종) 바이러스성간염, 바이러스성장염
 - (검사) 항원검사 : 매월(연 12회), 항체검사 : 반기별(연 2회)
 - (가금이동관리) 가금 이동시 질병 검사증명서 등 휴대 의무
 - *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제15조 : 고시로 정한 가축전염병은 검사증명서 휴대
 - 가금 이동시 휴대토록한 질병 검사증명서(시·도 가축방역기관 발급) 대신 시·군·구에서 발급하는 가금이동승인서*로 대체
 - 전통시장 및 가든형식당 등으로 출하시 가금이동승인서의 위변조방지를 위해 특수용지 사용하는 방안 검토
 - * 현재 사용중인 ‘브루셀라병 실험실 검사 의뢰서’는 연구소 의뢰용, 의뢰자 보관용, 농가 보관용이 한 셋트로 이루어져 위변조 불가
 - (거래기록) 농가는 가축거래 기록을 작성하고 2년간 보존
 - *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제16조 : 거래기록, 작성내용, 보존기간 등은 고시로 정함
 - (방역조치) 이동제한 및 살처분(1종, 2종) 또는 도태(2종)
 - (지도·감독) 입식현황을 포함한 사육현황 등을 분기별 점검
- 종오리장·부화장 방역관리요령(안) 마련중에 있으며,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'16.3월까지 제정 추진
- *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확대, 이동승인서 관리강화 등 세부추진방안 검토 중

7 가금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점검강화

-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생축 유통·이용체계를 축산물 유통·판매로 전환 유도 및 기반시설 등 지원('16년~)
 - 생축 유통체계를 축산물 유통으로 전환 시 축산물 판매시설 설치 지원(판매장 시설개보수, 냉장진열대 등)
 - 특수가금종 등에 대한 소규모 도축장 설치 지원('17년~)
 -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한 간이 도계장 설치 가능한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개정('15.1.6)
 - 기존 도축장에 대한 전통시장 유통가금 도축라인 설치 시 시설 지원 등('16년) * 토종닭 전용 도계라인 설치 등 시설보완자금 융자('14년 100억원)
- (전통시장) 불법도축 근절을 위해 식약처, 농식품부 및 경찰청 합동으로 집중단속 실시 등 관리강화 방안 추진('16.1월~)
 - 전통시장에 불법도축 가금류 구매 자제 홍보, 불법도축 시 처벌 등 사전홍보 병행을 통해 자율적인 참여 유도
 - 계도기간 및 관계기관 합동 집중단속 등 식약처 우선 협의
 - * 전통시장 가금판매업소에 대한 방역 및 위생실태 단속 병행
- (가든형 식당) 식약처, 농식품부 합동 방역·위생실태 단속(연 2회)
 - 자가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준수
 - “가축의 도살·처리 미허용지역”에서의 도살처리 여부
 - 축산업 등록여부, 가축사육시설기준 설치, 소독실시 및 기록 관리 등 방역기준 준수여부 등 집중 점검

V. 향후 추진계획

- 'AI 발생우려 대상 관리강화 방안' 보고 및 시행(12.21)
 - 발생농장 역학관련 농장, 계류장 등 예찰 및 검사 지속(12.22~)
 - 축산법에 따라 가금판매업소 등록 및 D/B 구축('16.1월~)
 - 전통시장 가금류에 대한 상시예찰 등 모니터링 강화('16.1월~)
 - 가든형 식당 사육시설 등록 및 점검 강화(12.22~)
 - 가든형 식당 가금 공급농가 출하관리 강화('16.1월~)
 - 종오리장·부화장 방역관리요령 마련('16.3월)
 - 가금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소규모 도축장 지원 등('16.1월~)
- 'AI 발생우려 대상 관리강화 방안' 추진상황 관리('15.12월~)
 - 세부 과제별 주기적인 추진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 운영

참고 1**역학관련 농장 및 시설현황**

구분	합계	농장	계류장	부화장	사료관련 시설	전통시장	왕겨관련 업체	기타
합계	494	359	10	10	18	74	10	13
김○수	59	14	1	1		40	1	2
이○복	13	4	2		1	3	1	2
박○운	4	1	1			1		1
심○경	15	5	1			9		
장○일	1		1					
허○철	7	2	2		1	2		
문○례	5	3	1			1		
김○용	47	29	1	1		15		1
백○순	23	23						
정○일	1	1						
최○진	43	38		2	3			
박○희	13	11		1	1			
이○임	6	5					1	
나○석	12	10		1	1			
곽○례	7	7						
김○섭	9	7		1	1			
임○현	49	44		2	2		1	
강○구	6	4			1			1
조○호	16	14			2			
강○희	41	40					1	
김○수	13	11						2
이○분	16	14			1		1	
강○섭	29	27		1	1			
양○숙	42	40						2
김○애	10	3			2		4	1
위○환	3	1			1			1
곽○안	4	1				3		

참고 2 가축거래상인 등록관련 규정(축산법)

□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(축산법 제37조의 4)

- 농가 또는 농장 등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할 때 해당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경우 거래상 등록증을 제시할 것
- 가축을 거래할 때마다 별지 제35호의7서식의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에 거래일자, 구입 또는 의뢰받은 농가 및 거래처·거래수량 등 그 내역을 적고, 이를 1년 이상 보관할 것

□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(축산법 제34조의 2내지 6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2관련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
		1회	2회	3회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	법 제34조의4제1호	등록취소		
2. 법 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법 제34조의4제2호	등록취소		
3. 법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34조의4제3호	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	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	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
4.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	법 제34조의4제4호	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	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	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
5.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	법 제34조의4제5호	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	등록취소	
6.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	법 제34조의4제6호	등록취소		
7.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	법 제34조의4제7호	등록취소		

■ 축산법 시행규칙 [별지 제35호의7서식] <신설 2013.4.11>

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

거래일자 (연월일)	일련 번호	거래 가축의 종류	거래 마릿 수	구매 또는 의뢰처		판매 또는 거래처		비고
				농장주명	소재지	상호	소재지	

※ 구입 또는 의뢰처는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은 곳을 적고, 판매 또는 거래처는 구입 또는 의뢰처로부터 구매 또는 위탁받은 가축을 알선·판매 또는 양도한 곳을 적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
참고 3**자가소비 및 자가조리 판매를 위한 도축 가능지역**

□ 시·도별 고시 현황(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·제3호 관련, 2013.6월 기준)

목적 시·도	자가 소비 목적 (법 제7조제1항제2호)	자가 조리 판매 (법 제7조제1항제3호)
서울	×	×
부산	×	×
대구	×	×
인천	○	○
광주	×	×
대전	×	×
울산	○	○
세종	×	×
경기	○	○
강원	○	○
충북	○	○
충남	○	○
전북	○	○
전남	○	○
경북	○	○
경남	○	○
제주	○	○

□ 시·도별 허용 지역·축종 현황(2013.6월 기준)

시·도	자가 소비			자가 조리		
	총 시군구	허용 시군구	허용 축종	총 시군구	허용 시군구	허용 축종
서울	25	×	×	25	×	×
부산	16	×	×	16	×	×
대구	8	×	×	8	×	×
인천	10	10	거위, 칠면조, 토끼, 사육하는 메추리, 꿩	10	9	사슴, 토끼, 닭, 오리, 거위, 칠면조, 사육하는 메추리, 꿩
		2	강화·옹진군은 돼지(사육하는 멧돼지 포함), 양(산양 포함), 흑염소, 사슴, 닭, 오리도 허용			
광주	5	×	×	5	×	×
대전	5	×	×	5	×	×
울산	5	2	닭, 사슴, 오리, 거위, 칠면조, 토끼, 메추리, 꿩	5	5	닭, 사슴, 오리, 거위, 칠면조, 토끼, 메추리, 꿩
세종	1	×	×	1	×	×
경기	31	26	닭, 오리 및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슴·토끼·거위·칠면조·메추리·꿩	31	30	닭, 오리 및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슴·토끼·거위·칠면조·메추리·꿩
		2	안산시 대부동(풍무동) 및 파주시 군내면(백연리 조산리)는 돼지·양도 허용			
강원	18	18	돼지, 양, 사슴, 닭, 오리, 거위, 칠면조, 토끼, 메추리, 꿩	18	18	닭, 오리, 사슴, 토끼, 칠면조, 거위, 메추리, 꿩
충북	12	4	돼지, 양	12	12	닭, 오리, 사슴, 토끼, 칠면조, 거위, 메추리, 꿩
		12	닭 오리, 사슴			

시·도	자가 소비			자가 조리		
	총 시군구	허용 시군구	허용 축종	총 시군구	허용 시군구	허용 축종
			토끼, 칠면조, 거위, 메추리, 꿩			
충남	15	5	돼지, 양	15	15	닭, 오리, 사슴, 토끼, 칠면조, 거위, 메추리, 꿩
		15	닭, 오리, 사슴, 토끼, 칠면조, 거위, 메추리, 꿩			
전북	14	14	사슴, 닭, 오리, 거위, 칠면조, 토끼, 메추리 및 꿩	14	14	사슴, 닭, 오리, 거위, 칠면조, 토끼, 메추리 및 꿩
전남	22	21	돼지, 양, 사슴, 닭, 오리, 거위, 칠면조, 메추리, 꿩, 토끼	22	22	닭, 오리, 사슴, 토끼, 칠면조, 거위, 메추리, 꿩
경북	23	19	돼지, 양	23	23	닭, 오리
		23	사슴, 토끼, 닭, 오리, 칠면조, 거위, 메추리, 꿩		22	사슴, 토끼, 칠면조, 거위, 메추리, 꿩
경남	20	12	돼지	20	20	닭, 오리
		13	양		11	꿩
		14	사슴		13	사슴
		17	토끼, 닭		8	거위
		12	오리, 거위, 칠면조, 사육하는 메추리, 꿩		6	칠면조
					10	토끼
5	메추리					
제주	4	4	돼지, 양	4	4 (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제 10·8조 가축 사육제한지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 한함.)	사슴, 닭, 오리, 거위, 칠면조, 토끼, 메추리 및 꿩

※ 시·군·구 내에서도 일부 읍·면·동·리만을 허용지역으로 지정